

# 정보통신공사업

◆ 등록기준

구분	자본금	기술능력	시설,장비,사무실
법인	1.5 억 이상	1.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(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) 2.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(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)	사무실
개인			

◆ 기술인력

※ 정보통신공사기술자란 :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[초급,중급,고급,특급]

1.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

등급	기술자격자	학.경력자	경력자
특급	기술사		
고급	1. 기사자격(기능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		
중급	1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		
초급	1.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	1.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.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)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	1.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.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(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)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.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

**2.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**

기술자격자	인정기술자	
	학력.경력자	경력자
기능사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	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.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

[국가기술자격법]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

기술사 : 정보통신, 산업계측제어, 전자응용, 전자계산기,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, 토목구조,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

기능장 :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

기 사 : 정보통신, 전파통신, 전파전자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전자, 전자계산기, 반도체설계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토목 또는 철도신호

산업기사 : 정보통신, 전파통신, 전파전자, 무선설비, 통신선로, 사무자동화, 방송통신, 전자, 전자계산기, 전자회로설계, 디지털제어, 반도체설계, 정보처리, 토목 또는 철도신호

기 능 사 : 통신기기, 통신선로, 정보기기운용, 전파통신, 전파전자, 무선설비, 방송통신, 전자기기, 전자계산기, 전자카드, 정보처리또는 철도신호

**◆ 공제조합 \* 정보통신공제조합 기준 2020년 6월 기준 : 1좌당 407,878 원**

업종	자본금	예치금	기본출자좌수
정보통신공사업	1.5억 이상	15,000,000 원 이상	37좌

**◆사무실**

\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,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등 농업,임업,축산,어업 용 건물,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**◆신규등록 소요기간**

\*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,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

\* 평균 30~35일 이내 소요